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3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4.

이 선 주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이선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공헌에 대한 표창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선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41
----------	----------

발의연월일: 2024. 4. 5.

발 의 자: 이선주, 정순옥, 정창근,
도하석, 남현주, 박종길,
황국주, 김장관, 이진환,
손범구

1. 제안이유

- 가. 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2021년 12월 21일에 일부개정되어 2023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된 「국민 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마련함. (안 제5조)
다.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공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사항을 마련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 참여)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심의) 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 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